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임 춘 대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파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등에 불편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고려하면,
이러한 이동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